

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요건(제7조제1항제2호 관련)

1. 조직

가. 법인체여야 한다.

나.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6항제4호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조직 구조, 운영체제 및 자체 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.

다. 평가기관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평가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.

- 1) 식품 등의 수출, 수입, 유통 및 판매
- 2) 식품 등의 통관 또는 통관대행

라. 평가기관의 내부 부서별 활동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.

마. 평가업무에 참여하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격, 훈련 및 경험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- 1) 성명 및 주소
- 2) 조직 내에서의 소속 및 직위
- 3) 입사 및 퇴사일자
- 4) 학력 및 전문자격 현황
- 5) 평가기관의 평가업무에 대한 실무 경력 및 교육훈련 사항

2. 자원 등

가. 최소 6개월 이상 평가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(해외식품 위생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임금, 사무실 운영 경비 등)을 다음의 사항 중 하나의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한다.

- 1) 법인통장
- 2) 기타 평가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

나.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해외식품 위생평가원을 10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.

- 1)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식품가공학, 식품공학, 의학, 약학 또는 수의학 등 식품 등의 검사와 관련 있는 분야의 전공자일 것
- 2) 식품 등의 안전 관련 인증에 관한 평가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

다. 현지실사 및 위생평가 업무의 상담, 서류 보관 및 평가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실과 사무관련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.

라. 평가 서류의 분실,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설·보안장비 및 보안규정을 갖추어야 한다.